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 이행요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본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賄賂, 중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입 제공 포함)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 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매천중학교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대구광역시

다. 용역범위: 불임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마. 용역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A=C+D)	용역추정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비 고
4,205,000	4,205,000	3,822,727	382,273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지점투찰 불허)
-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년 8월 5일 10:00부터 ~ 2026년 8월 7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8월 7일 11:00,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전산장에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위 1)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1.가.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상기 자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대상 폐기물은 [과업지시서]의 폐기물이어야 함**

나. 공동계약

- 1) 구성: 공동수급체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 2) **대표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3)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8.6. 18: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지 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천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정사유(별지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별지 1)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제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제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dgsbe.go.kr/>) ⇒ 교육지원마당 ⇒ 자료실 ⇒ 부서별 자료실 ⇒ 행정지원과(2번)』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나. 본 견적제출의 안내안,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 또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평생교육과(☎233-0162)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1588-0800)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과(☎233-0124)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불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불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계약상대자(확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